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. 2. 8 선고 2016가단196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(선정당사자)B

피고1. C

2. D

3. E

4. F

5. G

6. H

7. I

8. J

9. K

10. L

11. M

12. N

변론 종결2018. 1. 18.

판결 선고2018. 2. 8.

주 문

1.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○대 393m² 중

가. 피고(선정당사자) B, 피고 C, M은 각 351/2025 지분에 관하여,

나. 선정자 P는 45/2025 지분에 관하여,
다. 선정자 Q, R, S은 각 30/2025 지분에 관하여,
라. 피고 D, E, F, G은 각 87.75/2025 지분에 관하여,
마. 피고 H, I, J, K, L은 각 70.2/2025 지분에 관하여,
바. 피고 N은 135/2025 지분에 관하여
각 2001. 7. 27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(선정당사자) 및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T 및 그 처인 원고는 T가 U으로부터 전북 고창군 ○ 대 393㎡을 매수한 1981. 7. 27. 그 이후로 현재까지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. 따라서 U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1. 7. 27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청구의 표시

가. 피고 N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나. 나머지 피고(선정당사자) 및 피고들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에 따른 판결)

판사오세영

별지